파주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6.10.08]
(제정) 2026.10.08 조례 제2431호

관리책임부서명 : 농업정책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940-4564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파주시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어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농어업경영체"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.

2. "청년농어업인"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

나. 파주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, 시에서 농어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

제3조(책무) ① 파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수산 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・공급 및 제조, 가공,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)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

2. 청년농어업인 영농・영어 기반 및 농어업경영 지원 방향

3. 청년농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

4.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

5.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어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청년농어업인 지원사업 등) 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영농・영어 정착 창업 지원금 지원사업

2. 영농・영어 기술교육, 컨설팅 지원사업

3. 영농・영어 기반시설 및 자재 지원사업

4. 영농・영어 기술 향상을 위한 현장 실습 지원사업

5. 브랜드 개발,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

6.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

7. 농축수산 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

8.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)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.

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어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농어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발한다.

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 제한 등) 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

2.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(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)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

3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
4.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

5.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,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부칙(2026. 10. 8. 조례 제243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